

유족대표자 선정서

※ 아래쪽의 유족대표자 선정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유족 대표자	성명	생년월일
	주소 (전화번호:)	
	공로자와의 관계 의	

「6·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0조제4항 본문에 따라 본인들의 공로금의 신청 및 수령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 대표자에게 위임합니다.

년 월 일			
위 임 자			
1	성명 (서명 또는 인)	생년월일	전화번호
	주소		대표자와의 관계 의
2	성명 (서명 또는 인)	생년월일	전화번호
	주소		대표자와의 관계 의
3	성명 (서명 또는 인)	생년월일	전화번호
	주소		대표자와의 관계 의
4	성명 (서명 또는 인)	생년월일	전화번호
	주소		대표자와의 관계 의
5	성명 (서명 또는 인)	생년월일	전화번호
	주소		대표자와의 관계 의

첨부서류	위임자의 인감증명서(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) 1부
------	---

유족대표자 선정방법

- 유족 중 공로금 지급신청의 순위는 「민법」에 따른 재산상속의 순위에 따릅니다.
- 「민법」상 재산상속의 순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(「민법」 제1000조, 제1001조, 제1003조 및 제1004조 참조).
 - 가. 직계비속(자녀·손자녀)이 직계존속(부모·조부모)보다 선행위가 됩니다.
 - 나.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친이 선행위가 됩니다(즉, 자녀가 손자녀보다, 부모가 조부모보다 선행위가 됩니다).
 - 다. 배우자는 상속인인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이고,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.
-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서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나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를 선정하여 공로금 지급신청을 해야 합니다.
- 위임자가 성인인 경우에는 위임자 본인의 인감증명서(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)를 첨부하고, 위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(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)를 각각 첨부해야 합니다.